

2019-03

정
책
연
구
보
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지영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연구 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박지영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9-0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https://ggwf.gg.go.kr>

발간사


보건복지 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5,490여 개소 중 80%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20%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용시설 3종 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만도 170여개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탁자 당사자인 시설현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 계약체결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지표와 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법률적 변화에 대한 반영, 지표의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 과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별조례(안), 위·수탁 표준 계약서(안), 수탁자선정심의지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제언에서 우선 중앙차원의 법규와 지침을 정비하고 시·군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법적 개선과 공개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자체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에 필요한 교육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차원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시설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시설현장에서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 지자체마다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연구의 완성을 위해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공분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 유지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으나 위·수탁의 주체 사이에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갈등이 지속됨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계약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안), 심의지표(안)를 제시하는 등 과정의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 우리나라에는 IMF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인 국정관리 방식의 쇄신안으로 등장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부문을 통해 서비스 개발·제공·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군의 자치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위탁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등은 미흡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법률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및 배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미반영

- 시·군 자치법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음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한계

-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충분치 않고, 시군 조례가 법의 위임 사항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
 - 복지부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은 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지자체장이 가지는 것이 문제
-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
 -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구분 및 조건이 모호한 점
 -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미흡
 - 사업수행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미흡으로 장기간 수탁자에게도 위탁취소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
 - 시·군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위탁사무에 따른 개별 조례에 반영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사전공개
 -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홍보
 - 지자체에서 준용하는 조례에 선정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자선정기준 조항과 연계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
-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위탁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 중앙차원의 법규와 지침의 정비, 시·군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개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중앙 및 광역 정부의 평가와 민간위탁 연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개설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함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II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9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유형	11
	2. 시설 민간위탁의 현황	17
III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한계	33
	1.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35
	2.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36
	3.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	38
IV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43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향	45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49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51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52
V	결론	55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57
	2. 정책제언	60
	참고문헌	65
	부록	67

Ⅰ 표 차례 Ⅰ

〈표 I-1〉 3대 이용시설 운영주체 현황	4
〈표 II-1〉 민간위탁의 배경	13
〈표 II-2〉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14
〈표 II-3〉 민간위탁의 과정	16
〈표 II-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	17
〈표 II-5〉 보건복지부 지침	19
〈표 II-6〉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22
〈표 II-7〉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조례의 조항 분석	26
〈표 II-8〉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 구분	27
〈표 II-9〉 경기도 소재 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	28
〈표 II-10〉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중복응답)	30
〈표 II-11〉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31
〈표 III-1〉 조례 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시군	37
〈표 III-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단계별 문제점 요약	40
〈표 IV-1〉 표준조례안 비교표	50
〈표 IV-2〉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지표 비교	53
〈표 부록-1〉 기준점수표, 범례	75
〈표 부록-2〉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 선정심사 기준	88
〈표 부록-3〉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110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I-1〉 정부(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사업 비중 및 예산4
〈그림 I-2〉 연구수행체계8
〈그림 II-1〉 경기도 3종 복지관의 운영 현황28
〈그림 II-2〉 운영주체와 민간위탁 대상28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제로의 개편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민간위탁 제도의 위상에 대한 의문제기

-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작용하였으나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논의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요구
 - 1980년대까지 지속된 수용시설 서비스, 1990년대는 이용시설의 확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부각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책임이 민간에 위임되는 민간위탁의 양상을 보였음(김영중, 2017)
 - 그러나 지역 내 특정 기관(단체)의 장기운영 관습과 독점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조직을 갖춘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민간, 공공, 민·관의 자율경쟁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변화(공창숙, 2011)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주체 사이에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²⁾
 - 지방정부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과의 원활하지 못한 위·수탁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발전과 시설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대상에 대한 계획수립, 사례관리, 방문서비스와 같은 공공의 역할 요구 등

2) 최근 2019년 1월에도 경기도 △시 □복지관, 부산시 ○복지관 등 위탁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관련 기관 협회와 학계, 현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음

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운영법인과 시설 운영주체 및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 측면, 지역사회와 관계 등 민간과 공공의 입장에서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함

○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고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I-1〉 3대 이용시설 운영주체 현황 (2017. 4 현재)

(단위 : 개소, %)

운영주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합 계
지자체 직영	27	37	4	68 (6.8%)
자자체(공단)위탁	4	10	1	15 (1.5%)
민간법인 직영	98	30	54	182 (17.8%)
민간법인 위탁	331	270	161	762 (73.9%)
계	460	347	220	1,027 (100%)

* 출처 : 신용규(2017)

- 전국(지방정부) 민간위탁 사업 수는 9,652건, 사업 총예산은 약 5조 400억 원('16년 기준)
 - 사회복지분야 41.5%, 환경보호분야 30.6%, 문화분야 7.7%의 비중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93%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경기복지재단, 2013)



단위 : 백만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8)

〈그림 I-1〉 정부(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사업 비중 및 예산

-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이에 따라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
 - 그러나 사전 적정성 검토에 경제적 효율성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92.6%(국민권익위원회, 2018)
 - 특히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지표)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사업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중요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의 사전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전체의 85.2%) 객관적인 지표 보다는 지자체 장의 주관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사용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7.1%에 달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은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를 마련하는 것임
 -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필요
 -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위탁과정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낭비 방지를 위해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 성과평가 결과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2011년과 2013년에 이용시설의 위탁심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공하여 활용 중이나 심의 과정과 법적 근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

- 2016년 연구자 자체조사 결과로는 24개 시·군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위탁심사를 추진하고 있음
 - 신생법인과 기존법인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위탁과 재 위탁을 구분하여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
 -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양주, 여주, 용인에서 미사용
- 그러나 최초 지표 설계(2011년)가 주로 사회복지관을 위탁받는 법인과 운영주체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8)를 포함하여 법률 및 지침을 적용하고 개선한 기준마련이 필요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의기준(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필요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

○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심의지표와 기본조례안, 위·수탁 계약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한 기본조례(안) 작성
- 기존 연구의 결과물로 현재 시군에서 활용 중인 수탁자선정심의지표를 개선하고 신규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제시
- 타 시·도, 시·군의 관계 법령들을 검토하여 위탁기관과 수탁자로서 상호계약을 체결하는데 서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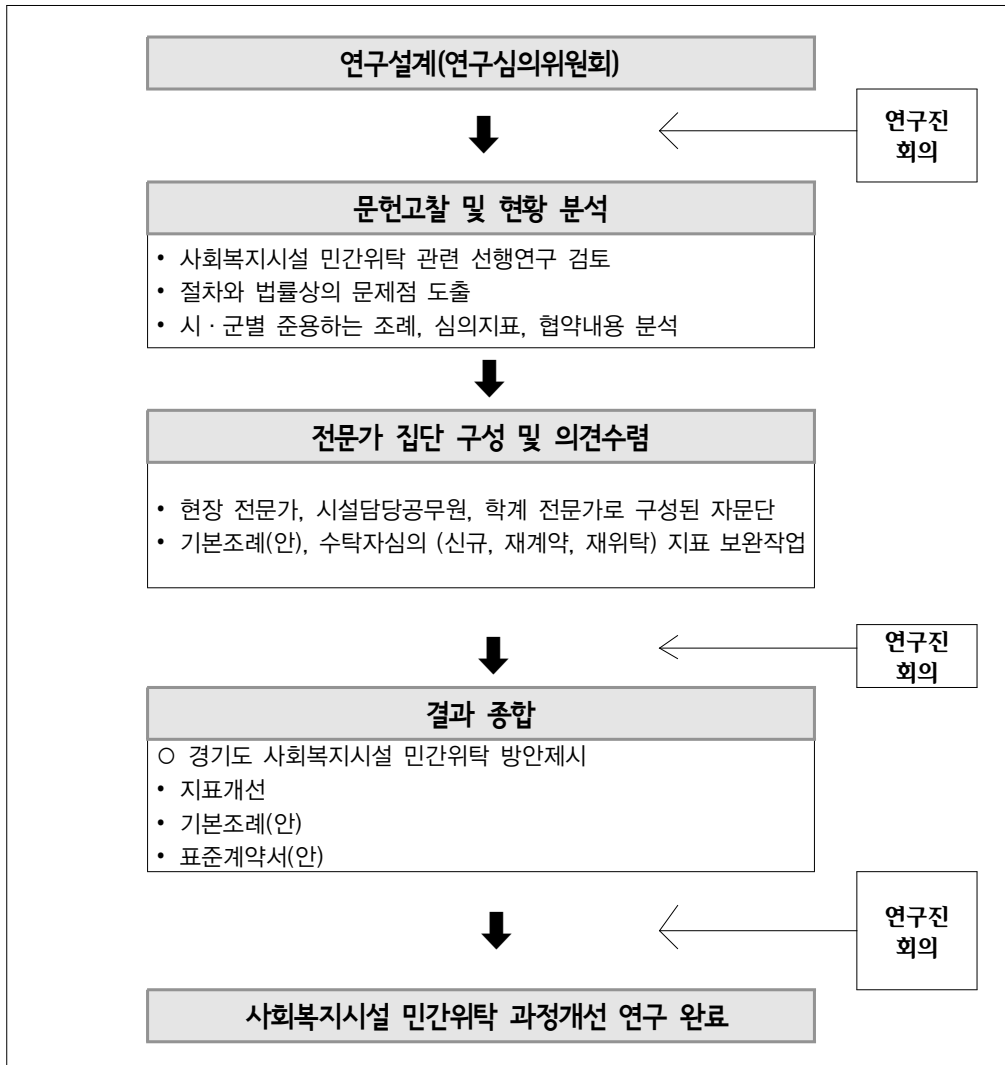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 본 연구는 하반기 이후 민간위탁이 예정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 지리적 범위 : 전국
 -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도를 모두 포함하여 활용되는 법령 지침과 절차, 지표를 검토함

□ 연구 방법

- 문헌검토 : 기존에 활용되어온 지표 분석 및 이론적 토대를 위한 선행연구
 -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유형 및 현황, 역사적 배경 등을 검토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과정, 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 확인
-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장, 학계 전문가
 - 시·군에서 직접 위탁심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필요 사항을 점검
 - 필요에 따라 약식 질문지를 제공하고 답변을 받는 식의 의견수집 진행
 - 현장의 사업내용과 적절한 측정범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조례, 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
 - 법적근거, 조문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문
 - 기존지표의 검토와 시설 위탁 및 운영 측정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지표개발
 -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영역 및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그림 I-2〉 연구수행체계

II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유형
2. 시설 민간위탁의 현황

II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유형³⁾

1) 민간위탁의 등장 배경

- 1980년대 이후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공공 부문의 팽창과 경기 침체가 요인으로 작용
 - 영국정부의 재정 위기와 미국의 적자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비영리 조직으로 서비스 전달 확대
 - 작은 정부와 성과주의가 강조되면서 정부가 직접 계획, 공급하던 공공서비스가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고 제3섹터, 비영리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음
 - 영국은 80~90년대 신공공관리(NPM)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사무와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행정질서가 출현·확대됨
 - 9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 시장화 전략이 도입되고 제3섹터의 비영리 조직들에 의한 서비스 전달도 확대되기 시작
 - NHS 및 지역사회 돌봄법(NHS & Community Care Act, 1990)이 제정되고 공급자 간 경쟁의 원리 도입
 -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의 제도적 분리, 보조금에 의한 자금 지원에서 계약 및 수수료에 기반한 서비스로의 제도적 전환
 - 지방정부는 서비스 표준에 기초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공급을 조직화하며 구매하는 위탁자(commissioner)로서 역할이 전환
 - 시장과 개인을 신뢰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채택하면서 민간위탁 활성화

3) 정병순(2019),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박윤희(2012)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 영국의 블레어 정부에서도 보수당 정부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서비스 외주화(out-sourcing)가 진행
 -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3섹터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민관파트너십 확대
 - 서비스 수탁주체로서 제3섹터의 역량 형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투자 전개
 - 제3섹터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
- 2000년대 초기 전략적 커미셔닝(strategic commissioning)으로 부르는 새로운 위탁 프레임이 등장
- 전략 커미셔닝은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해당하는 조달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정의
 - 주계약자 모델과 장기간의 계약기간 설정, 성과기반 지불체계 강화와 차별적 가격체계, 서비스 표준의 최소화와 블랙박스 예산을 통해 운영 자율성 확대, 복지급여 절감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 커미셔닝의 특징
- 우리나라에는 IMF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국정관리 방식을 쇠신하고자 행정개혁을 시도
-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기능의 조정과 조직과 인력의 축소인데 이러한 방안으로 주창된 것이 민간위탁
- 조직 내적인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의 정부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은 기능에 대한 조정이 없이도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정 정도를 지나칠 경우 구성원의 업무량을 지나치게 과중시켜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정부 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해당 기능이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

〈표 Ⅱ-1〉 민간위탁의 배경

등장 배경	촉발 요인	방법 및 수단
민영화의 시대적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규제, 지도 중심에서 조정, 보완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원리의 작용 •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행정기능의 비대화와 자성적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범위 확대, 조직 확장, 공무원 증가 • 역기능 심화, 관료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구현 • 행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민간자원의 활용·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압박 심화 • 행정수요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능의 제고 • 단순기능 위탁→운영전반 위탁

*자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2004)

2) 민간위탁의 개념과 목적

□ 민간위탁의 개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⁴⁾’
 -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민간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Savas 1987; 박윤희 ; 2012 재인용)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명시
 -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어 민간위탁은 법률적 용어로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김영중, 2017)⁵⁾

□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하는 것임

- 장점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생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34호

5) 보건사회연구(2017),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공공부문에 비해 조직 및 기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부문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34조제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

〈표 II-2〉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민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식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비용 절감 • 공무원 인력 증원 및 성장 억제 • 서비스 관리 전문성으로 인한 서비스 질 개선 효과 •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 •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 •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 가능 • 규모의 경제 실현 •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쟁을 통한 우수 수탁자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지도·감독 및 감사 사업비 정산 •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 책임소재 불분명 • 종사자 고용의 불안정성 •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일관성 약화 •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논란 • 수탁자선정과정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 각종 시설 개/보수 시, 지자체와 수탁자 간의 비용전가 우려 •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미흡 • 정부의 책임 및 통제의 약화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8)

○ 민간위탁은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되,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비용부담은 공공이 담당

-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능률성을 높임 (이인희, 2004)⁶⁾

6) 이인희(200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2008)

3) 민간위탁의 계약 유형

□ 민간위탁은 정부(위임자)와 수탁자(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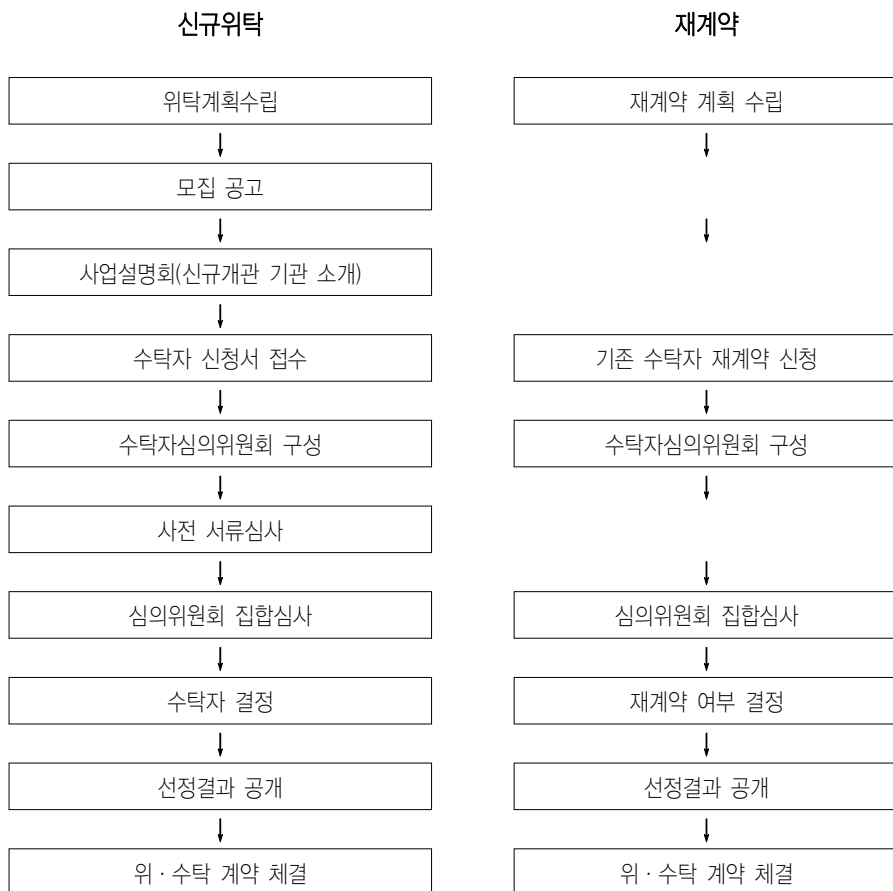
- 서비스 계약 방식(service contract)은 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보유하고 일정한 범위의 제한된 서비스만 외부 조달하는 방식
 - 계약에 의한 가로수 관리나 도로 보수 등이 이에 해당됨
 - 민간이 관리와 운영을 하고 정부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
 - 법인이나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음
- 관리운영 계약(management contract)은 수탁자가 정해진 위탁 관리비로 시설의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방식
 - 자치단체는 신규 투자 및 운영 자금의 조달 등과 같은 재정적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신규 투자나 운영상의 재정적 책임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3~5년 정도
- 임대차 계약(lease contract)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
 - 지자체가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규 시설 투자와 재원조달 및 중요 시설교체 등의 책임을 짐
 - 민간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실, 차량, 보수 등의 운영자금을 조달함
- 양여권 계약(concession contract)은 민간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보수, 유지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 자본투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공급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
 - 이는 민간 수탁자의 투자 수준과 자본 회수기간에 따라 20~30년 정도의 장기간 계약을 체결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은 관리운영 계약방식과 서비스 계약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임

4) 민간위탁의 진행 과정

□ 수탁자 선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음

- 민간위탁의 과정은 신규위탁(재위탁 포함)과 재계약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규위탁은 위탁계획 수립, 공개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수탁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사전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심사, 수탁자 결정, 선정결과 공개, 위탁계약 체결로 단계적 심사절차를 거침
 - 재위탁은 신규위탁과 과정은 동일하며, 기존에 운영되던 기관이라는 차이만 있음
 - 재계약은 모집공고나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표 II-3〉 민간위탁 과정



2. 시설 민간위탁의 현황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자치법규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갑” 이 되고 법인이 “을” 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 결정과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권한을 민간에 이전
 - 법적으로는 위탁자인 지방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보유하면서 수탁자인 민간의 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하는 방식
 - 시행규칙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방법부터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계약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시·군별로 자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

〈표 Ⅱ-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

구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분	내용
	<p>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p>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p>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법률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및 배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미반영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능력, 기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등 심사기준과 중요도에 따른 배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심사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세부 기준으로 분류하여 배점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에는 위원 9명 중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 구성할 것을 제안
-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이 처음 시설위탁 업무를 시작한 경우,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별 사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침에는 주로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지표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선정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 2018년 두 차례, 지자체 조례와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미반영

〈표 II-5〉 보건복지부 지침

구분	내 용		
위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수탁신청방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 • 심의기준 및 배점(100) 예시 		
	구 분	배점	특이사항(가점적용 등)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20	
	기 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재계약 시 지도점검 결과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규칙 제21조의2), 심의 과정에서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법인전입금 출처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법인전입금의 자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 •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함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 		

구분	내 용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 원칙적으로 재 공모, 필요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5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위·수탁관련 내용 재구성

2) 시·군의 자치법규⁷⁾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5개 시·군⁸⁾

-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통합된 내용의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은 많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 2006년에 제정하고 지역 내 시설의 유형이 추가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 지원 사항,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
 - 김포시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에 3종 복지관 내용을 담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는 한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을 준용하는 시설의 유형과 조례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시·군 자치법규 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노인복지관 및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각기 다른 조례 사용
 -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시설은 관리 부서를 달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활용하고 있음
 - 이런 조례들의 특징은 계약기간⁹⁾, 재계약 가능 여부를 비롯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자 평가기준,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 포함되어야 할

7)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자치법규 약 160개를 분석한 결과의 요약

8) <표II-6>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참고

9) 2016.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5년 일괄 적용

내용들이 통일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참고 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 제시가 필요
 - 민간위탁은 본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조직을 통해 정부예산을 사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함
 - 경기도는 계약기간을 미규정한 시·군부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아예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한 조례는 부천시, 과천시, 양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이며, 평택시, 양평군, 여주시, 구리시, 양주시 등에서는 재계약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고 기약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시설이 특정 법인에 사유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5년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을 해석하기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재공고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음

□ 시·군별 시설 민간위탁 조례와 규칙

〈표 II -6〉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2019년 6월 현재)

번호	구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시설			노인복지관/시설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3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이내	1회 가능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5년 이내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이내	1회 가능
4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위탁기간 5년 / 재계약 가능)								
5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이내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미규정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미규정
6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7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미규정	미규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8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미규정
9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위탁기간 5년 / 재계약 불가)								
10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번호	구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시설			노인복지관/시설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1회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5년	1회 가능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5년	1회 가능
12	광주시	해당없음(미설치)	-	-	해당없음(미설치)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13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포함),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위탁기간 5년 / 재계약 1회 가능)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	이천시	해당없음(미설치)	-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15	안성시	해당없음(법인직영)	-	-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미규정	미규정
16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시행규칙	5년	미규정
17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1회 가능

번호	구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시설			노인복지관/시설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18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3년	1회 가능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1회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1회 가능
19	여주시	해당없음(미설치)	-	-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20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이내	미규정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21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이내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2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5년	1회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1회 가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이내	1회 가능
23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이내	가능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이내	1회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24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 5년 / 재계약 가능)								
2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번호	구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시설			노인복지관/시설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조례명	위탁 기간	재계약
26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미규정	미규정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해당없음(미설치)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27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미규정	미규정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1회 가능
2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가능	해당없음(미설치)	-	-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미규정
29	동두천시	해당없음(미설치)	-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이내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이내	가능
30	가평군	해당없음(미설치)	-	-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5년	1회 가능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년	1회 가능
31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해당없음(미설치)	-	-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5년	가능

〈표 II-7〉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조례의 조항 분석

지역명	선정 ¹⁰⁾ 기준	수탁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성과 평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
		구성	비율	자격	제척 제도			
수원시	×	○	○	×	×	×	×	×
성남시	×	○	×	×	×	×	×	○
부천시	×	×	×	×	×	×	×	○
용인시	○	○	○	×	×	○	○	○
안산시	×	×	×	×	×	×	×	○
안양시	×	○	×	×	×	×	×	○
평택시	×	×	×	×	×	×	×	×
시흥시	×	×	×	×	×	×	×	○
화성시	○	○	×	×	×	○	○	불가
광명시	×	×	×	×	×	×	×	○
군포시	×	×	×	×	×	×	×	○
광주시	-	-	-	-	-	-	-	-
김포시	×	×	×	×	×	×	×	○
이천시	-	-	-	-	-	-	-	-
안성시	-	-	-	-	-	-	-	-
오산시	×	○	○	×	×	×	×	○
하남시	×	×	×	×	×	×	×	○
의왕시	×	×	×	×	×	×	×	○
여주시	-	-	-	-	-	-	-	-
양평군	×	×	×	×	×	×	×	×
과천시	×	○	×	×	○	×	×	○
고양시	×	○	×	×	○	×	○	○
남양주시	○	×	×	×	×	○	×	○
의정부시	×	○	○	×	○	×	×	○
파주시	×	○	○	×	×	×	○	○
구리시	×	×	×	×	×	×	×	×
양주시	×	×	×	×	×	×	×	×
포천시	×	×	×	×	×	×	○	○
동두천시	-	-	-	-	-	-	-	-
가평군	-	-	-	-	-	-	-	-
연천군	×	×	×	×	×	×	×	○

*X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O는 “명시되어 있음”, -는 해당없음을 표시함
 조례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
 라 위탁운영자를 선정 한다” 정도로 명시됨

10)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복지재단 지표, 자체 작성 지표 모두 포함

3)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80%가 위탁 운영 됨

- 보건복지 통계연보(2018)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통계에 의하면 지자체가 설치/운영 하는 시설 5,495개소 중 4,305개소(78.3%)가 운영되고 1,190(21%)가 직영
 -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941개소 중 875개소(93%), 장애인 분야 596개소 중 579개소(97.1%), 사회복지관 336개소 중 308개소(91.6%) 등으로 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 또는 노숙인자활시설 등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으로 100% 운영되고 있음

〈표 Ⅱ-8〉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 구분

(단위 : 개소)

구분	총 시설 수	지자체 설치/운영 시설			민간 설치/운영 시설				
		소계	직영	위탁	소계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법인 외 단체	개인
계	59,536	5,495	1,190	4,305	54,041	6,276	4,621	554	42,590
노인	9,428	941	66	875	8,487	2,351	1,006	67	5,063
아동	5,092	155	20	135	4,937	668	691	303	3,275
장애인	3,507	596	17	579	2,911	1,535	967	11	398
정신보건	398	11	2	9	387	171	78	2	136
노숙인	153	49	0	49	104	44	36	7	17
결핵 및 한센	7	1	0	1	6	4	2	0	0
지역자활센터	249	249	11	238	0	0	0	0	0
사회복지관	464	336	28	308	128	111	17	0	0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2018)-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통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19 기준) 경기도 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 141개소, 아동 : 32개소, 장애인 : 93개소, 정신보건 : 23개소, 노숙인 12개소, 결핵 및 한센 2개소,
- 지역자활 : 2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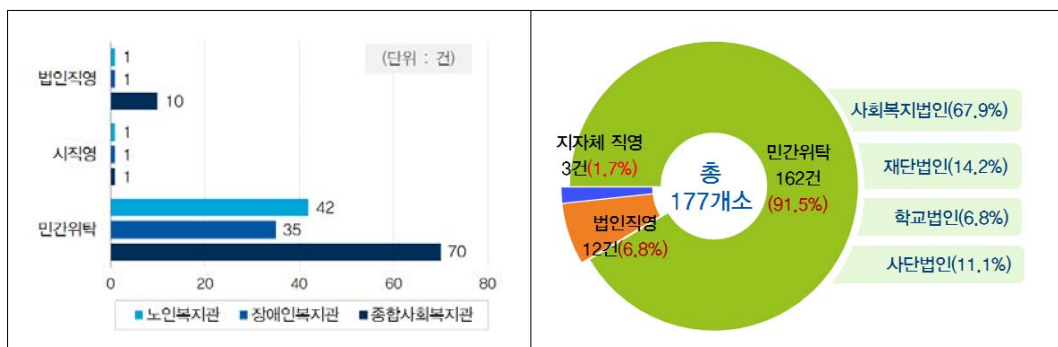
□ 경기도 3종 복지관은 92%이상이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

- 2019년 6월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관 81개소, 노인복지관 59개소, 장애인복지관 3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은 81개소 중 지자체 직영 1개소, 법인의 직접운영 10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이 45개소, 학교법인이 7개소, 재단법인이 7개소, 사단법인이 5개소 운영
 - 장애인복지관은 총 37개소 중 지자체 직영 1개소, 법인직영 1개소를 제외하고 위탁
 - 사회복지법인이 23개소, 재단법인이 7개소, 사단법인이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노인복지관은 6월 현재 총 59개소이며 지자체 직영 1개소, 법인직영 1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사회복지법인, 4개소는 학교법인, 8개소는 재단법인, 3개소는 사단법인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음

〈표 II-9〉 경기도 소재 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지자체 직영	법인 직영	민간위탁(운영주체)				
				소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총 계	177	3	12	162	110	11	23	18
사회복지관	81	1	10	70	45	7	8	10
장애인복지관	37	1	1	35	23	-	7	5
노인복지관	59	1	1	57	42	4	8	3



〈그림 II-1〉 경기도 3종 복지관의 운영 현황

〈그림 II-2〉 운영주체와 민간위탁 대상

□ 경기도 시·군별 시설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 조사 기간 : 2019. 6. 11(화) ~ 6. 25(화)
- 조사 방법 : 공문 발송을 통한 설문지 취합
- 31개 시·군 중 최근 1년 이내 민간위탁을 위해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11개 시군의 17명이 설문에 회신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음

○ 조사결과

1) 민간위탁의 근거 및 조례의 구체성

○ 시·군에서는 조례에 절차와 심사기준 위원회 선정 및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족함

- 민간위탁의 근거로 ‘시군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 법규로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16명)이었음
- 조례의 구체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군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는 위탁사무의 기준, 위탁사무의 적정성, 선정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조례는 위탁 주체, 위탁기간, 재계약 가능여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준(인원수 등) 제시, 재계약 횟수 명시 등을 구체적인 정도로 답하였음
 - 개별조례가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중 5개 시·군에 불과

2)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용 지표

○ 심사기준에 대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라고 명시하거나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정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9명(52.9%)이 보건복지부 예시

를 활용한다고 응답

- 경기복지재단 지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명(17.6%)이었고, 해당 시의 조례(지침)에 제시된 지표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구성한다는 답변도 3명(17.6%)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서울시 등 타시도의 예시를 활용하는 경우도 2명(11.8%)이 해당

3)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응답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의지표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8명(42.1%)씩 나타남
- 선정심의 위원 구성의 자율성 혹은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명(10.5%), 명시화된 상위 법률은 1명(5.3%)이 필요하다고 응답

〈표 II-10〉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중복응답)

(단위 : 건,%)

번호	문항	빈도	퍼센트
1	구체적인 지침	8	42,1
2	명시화 된 상위법률	1	5,3
3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의 지표	8	42,1
4	선정심의 위원 구성의 자율성 혹은 공정성 담보	2	10,5
5	기타	-	-
	합 계	19	100

4)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의 장기 운영에 따른 사유화’ 라는 응답이 8명(40.0%)로, 법인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 ‘수탁을 원하는 경쟁 법인이 없다’ 라고 답한 공무원은 6명(30.0%)으로, 한 법인이 시설을 장기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줌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한 수행’ 이 어렵다는 응답자도 3명(15%)이었으며, 이해관계 없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 구성, 지자체장과 시설운영자 또는 법인의 유착, 적은 심의 시간으로 심의지표에 의해 평가하기 어려움 등을 제시한 경우도 각각 1명(5.0%)씩 존재

〈표 Ⅱ-11〉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건, %)

번호	문항	빈도	퍼센트
1	수탁을 원하는 경쟁 법인이 없음	6	30.0
2	시설의 장기 운영에 따른 사유화 (법인 교체의 가능성 낮음)	8	40.0
3	이해관계 없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경험자(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1	5.0
4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한 수행	3	15.0
5	지자체장과 시설운영자 또는 법인의 유착(정치적 연대)	1	5.0
6	기타(적은 심의 시간으로 심의지표에 의해 평가하기 어려움)	1	5.0
	합 계	20	100

5) 민간위탁과 관련한 기타 의견

○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신규위탁과 재계약시 활용할 지표예시로, 재위탁과 재계약 시 상황에 맞는 적합한 공통 지표가 있었으면 함

- 사회복지시설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선정표 기준(예시)이 필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선정 시 노인복지관(이용시설)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
 - 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에게만 점수가 높게 나오는 문제 발생
 -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약 2년 정도)으로 문제 점을 발견하기도 전에 지자체장·도의원·시의원과 법인·시설운영자의 유착에 의한 업무지시에 따라가는 현상이 있음
- 민간위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움

○ 민간위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세부절차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

- 재량 및 정량평가 구분 불명확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된 지표에 재량평가 문항이라고 표기된 문항 이외에도 재량 평가 문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존재하여 정량과 재량의 구분을 다시 해주길 바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축
 - 재량평가 문항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선정심의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재단 연구원 등)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처럼 인력풀을 구축하여 시군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III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한계

1.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2.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3. 수탁자 선정의 적절성 부적절성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한계

1.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충분치 않고, 시·군 조례가 법의 위임 사항을 모두 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근거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민간위탁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배성기, 2016)¹¹⁾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선정 시 마다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내부결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¹²⁾
 -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부족한 수준의 조례를 유지하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으며 이를 불식시키고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계약 담당자인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업무 시에 규정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선정과정이 단계별로 자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¹³⁾
 - 조례가 있음에도 위탁기간 조차 미규정된 시·군이 있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는 영역으로서 재계약에 대한 사항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에 가까운

11) 민간위탁 현황 분석(2016),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12)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없음 (92.6%)로 조사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3) 경기도 시설 담당 공무원 서면 의견조사 결과 참고

조례 표준안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법률상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며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개별조례로 제·개정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공개모집’이 의무조항이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필요한 경우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매우 포괄적이고, 재위탁 심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재계약의 요건이 불분명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또는 시·군의 조례와 규칙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위탁 운영의 기준과 방법을 찾기에 어려움
 -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시설 유형별 조례가 따로 있고 사무위탁 기본조례가 있어서 적용의 충돌이 일어나며 구체성은 미흡함
 - 재위탁(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기준, 운영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음

2.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불신감 팽배

-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을 가짐(공창숙, 2011)
 - 최근 관련 연구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개관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54.8%)로 지적하였고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재,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음
 - 실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당 조례에 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1〉 조례 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화성시, 오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수원시, 고양시,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원시, 화성시, 과천시, 의정부시, 연천군
*00시 사회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시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소관 국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5. 00시의회에서 추천하는 00시의회의원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있어 “지방권력의 남용” 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다는 의견(신용규, 2017)¹⁴⁾이 있음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나 현재는 공무원 혹은 정치적으로 동질의 인력을 다수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함
 - 복지부의 안내에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1/2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 제안이 지켜지지 않고 위원 구성의 전권을 지자체(장)이 가지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음
- 경기도의 최근 사례에서도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¹⁵⁾
 - 수탁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이 공정한 기준이 없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므로 불공정의 우려가 있음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한 수행’ 이 어렵다는 공무원 대상 설문 의 응답에서도 심의위원회 자격조건 및 구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

14) 위수탁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왜곡 토론문(201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문 참고

3.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

□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구분 및 조건

- 시설을 처음 설치하고 운영법인을 모집하는 신규위탁은 비교적 공정성을 기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몇 가지 개선점이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시되는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은 법인의 건전성, 시설 운영 능력을 확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초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법인의 사업 전문성, 재정부담 능력, 유관기관과의 공신력 제공방안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과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모집 범위를 대부분 자체 시·군이나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홍보 기간도 약 2주 정도로 짧음
 - 모집 공고 조건에 수탁실적, 수상실적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신규 법인 또는 자체 운영법인은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신규위탁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제척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심의 일정이 짧고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인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고도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재계약 심의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는 법인의 운영 능력 확인과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는 건실한 운영체를 모집, 상호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법인의 공신력’ 혹은 ‘운영능력’ 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적합한 검증은 도구가 부실함
 -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수탁희망법인이 제출한 문건만으로 실제 운영에 대한 건실성을 검증하기에는 서면평가의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사전 심사와 현장실사 등이 없으며, 심의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됨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재계약 심의 기준이 없어 신규위탁 심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

- 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은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지도점검과 평가결과가 재위탁 심사와 연계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운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이는 법과 지침에 맞게 지자체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 하면 개선이 가능함

□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에 대한 타당성 확보

- 수탁 신청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적절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인력의 구성과 자격 여부,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과 과정 및 평가의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수정이 필요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예시나 시·군에서 직접 작성하는 기준은 범위가 넓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타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음
 -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지침”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심의지표” 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공신력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와 서비스 효과 평가는 성격이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이용자의 수가 많은 서비스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성과측정과 평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중간 평가와 자체평가로 수탁기간 만료 전에 확인하여 다음 수탁심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 지표를 가지고 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전국 시설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일정하게 표준화된 서비스의 품질을 갖추는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복지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직접적인 사무는 시·군에서 담당함에도 시설에 대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 결과를 받지 못함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적 욕구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화 하여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 필요

□ 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요약

- 민간과 공공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온 민간위탁의 단계별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압축됨
 - 위탁준비 단계에서는 시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가 미흡
 - 위탁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고려한 위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신이 존재하며, 사전 적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신규위탁의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조례에 담도록 제안하였음
 - 위탁진행 과정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임
 -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이 없으므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수탁심사 참여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음
 -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장기간 수탁자에게 조차 위탁 취소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사업 수행결과는 연말에 사업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같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표 Ⅲ-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단계별 문제점 요약

단계	업무내용	고려사항	문제점
위탁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여부 결정 · 위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성: 선정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기회 제공 ▶ 전문성: 전문적인 운영 평가가 가능 ▶ 수탁체 자격요건, 선정방법,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상세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견제 기능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 · 설명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개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공모 ▶ 접수기간 최소 1개월 ▶ 홈페이지공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 일간지공고(중앙지, 지방지 각 1회) ▶ 사회복지협의회 공지 	

<p>위탁 진행</p>	<p>제공)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설정 • 심의·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개최를 통해 위탁추진 배경, 수탁 조건 등 명료화 ▶ 설명회 직후부터 신청서 교부 ▶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병행 ▶ 전문성, 중립성, 비공개성 원칙: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문성 확보, 정치적 이거나 연고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 선정 위원 비공개. ▶ 심의위원회 소집 최소 1주일 전 확정 ▶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3인 이내(위원장 포함) - 실천전문가 1인 (시설 중간관리자 급) - 법률전문가 1인 (공인회계사 등) - 관련 단체 관계자 1인 (수요자 대표) - 시민단체 대표 1인 (복지관련, 시의원 제외) - 순수전문가 2인 (교수, 연구자 등 학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자들로 구성(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차출로 활용).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심사 → 서류심사 → 사업설명회 → 현장방문 → 면접 ▶ 선정결과 공표 ▶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접수 ▶ 약정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심의의 불공정 문제 • 이의신청절차 부재로 당사자의 행정절차 참여 보장에 미흡
--------------	---	--	---



<p>사후 관리</p>	<p>• 정기 또는 수시 관리·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서비스 성과,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 ▶ 위탁 당시의 사업계획서 이행 정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자부담 이행 등 ▶ 현장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등 공무원 이외의 다수자를 지도 감독팀으로 구성운영 ▶ 선정심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 위탁 취소 근거의 부재로 수탁기관에 대한 재제 미흡
--------------	-------------------------	---	--

IV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향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향

1)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에 대한 검토·도입이 필요
 -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전절차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43개 지자체 중 225개(92.6%)가 사전 적정성 검토를 세부조례에 명시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사무에 따른 ‘개별 조례’ 등에 반영
 -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함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해야 함

2)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공개

□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을 사전 공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외부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등이 미리 공개되고,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절차가 중요함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2.9%에 불과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 경기도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도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지자체는 거의 없음
- 개선방안은 각 지체에서 준용하는 조례에 선정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추가
 -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을 추가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신청자는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선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해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준수토록 함
 - 특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정보공개 청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공고문에 표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마련
 - 수탁자 선정결과와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항은 수탁자 선정기준 조항과 연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선정
 - ②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 ③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참여를 배제
 -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⑤ 선정심의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마련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사용을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를 준용하거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활용
 -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21조의2 및 「00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임
 - 실제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75.3%에 달함¹⁶⁾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성과평가가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로 대체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
 - 동인 수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임
 - 그러나 재계약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거의 없고, 재계약 이전에 간단한 보고수준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있음
- 수탁자의 주요계약 사항 위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위탁의 취소사유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수탁 계약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명문화 하는

16) 국민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것임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시설 운영 중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 시·군의 지도·점검 또는 법령에 의한 평가결과를 위탁시 사후관리 및 평가와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위탁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 경기도 31개 시·군 시설 담당공무원의 가장 큰 요구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제시이며 조례 등 기준이 마련되는 것임
 - 시·군별, 각 부서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들의 공통 사항을 포괄하고 개선방안을 담아 표준안을 마련
 - 표준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 사항과 신규위탁, 재위탁(재계약)을 위한 심의기준안을 포함하여 활용도를 높임
 - 신규위탁 / 재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 수탁자심의기준을 제안하여 활용·응용하게 함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 수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 안을 제안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의 표준안 제시

- 시·군 공무원이 위탁사무를 실행할 때 직접적 근거와 지침이 되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법률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포함
 - 둘째, 위탁사무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
 - 셋째, 위탁기관과 수탁자 상호간의 권리를 보장·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타 시·도와 시·군의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를 검토한 내용을 반영
 - 조례 내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담당 부서별 조례 160여개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
 - 타 시·군에서 개별조례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검토하고 필수 내용 도출
 -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 대상 질문지 조사를 통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심의지표를 포함
 - 00시 법률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형식과 내용 측면을 보완
- 조례안의 최대 장점은 단계별 필요 항목을 구체화하였음
 -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지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의회동의 안, 이의신청 등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상호 견제기능을 추가하였음
 - 제2장 수탁자선정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추가하였으며 제3장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빼고 일방적인 측면은 배제, 성과평가 영역은 추가하였음

〈표 IV-1〉 표준조례안 비교표

내용	조항	
	2013	20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명칭과 위치 제5조 원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과 위치 제4조 기본이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수탁자 선정 절차	제6조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내용 제7조 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 수탁자 선정 제9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9조 시설운영의 위탁 제10조 수탁자 선정 제11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계약과 위/수탁 자의 의무	제11조 위탁계약 체결 제12조 위탁기간 제13조 고용승계 제14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15조 재위탁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제17조 운영지원 제18조 지도감독·감사 제19조 보조금 반환명령 제2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위/수탁기간 제17조 위/수탁 계약체결 제18조 고용승계 제19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20조 재계약 제21조 운영지원 제22조 지도감독·감사 제23조 보조금 반환명령 제24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25조 성과평가
제4장 기타 사항	제23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24조 손해배상 등 제25조 위탁의 취소 제26조 준용 제27조 시행규칙	제26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27조 손해배상 등 제28조 위탁의 취소 제29조 시행규칙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 위·수탁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

- 실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계약서 사례를 수집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 첫째,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상호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전환
 - 둘째, 필수 계약사항에 대한 제안을 의무화 하는 등 변화 반영
 - 예를 들어, 종사자 고용승계는 “ ~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 해야한다” 로 수정하는 방식
 - 셋째, 조례 내에 적시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구체화
- 실제 사용 중인 시·군의 민간위탁 사례를 바탕으로 보안작업 수행
 - 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활용되는 계약서의 내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
 - 최근에 적용되어야 할 “갑” “을” 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자 권익위 권고사항, 새로운 법률 등을 검토하고 추가함
 - 00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작성 완료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위·수탁자 상호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항을 작성, 검토하였음
- 자치단체 마다 상황이 다르고 실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지원 차원에서 제시되는 제안사항으로 참고할 수 있음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¹⁷⁾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용될 심사지표 제안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체심의지표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함
 - 첫째, 신규위탁 및 재 위탁지표와 재계약 지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청 법인과 운영주체의 적격성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 있게 하였음
 - 둘째, 사회복지시설 안내와 사회복지사업법 등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
 - 셋째, 지표를 간소화 하되 수탁자 선정에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점수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넷째, 기존 사회복지법인과 신생법인 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필요사항을 추가·보완 함
 - 시·군 담당 공무원은 실제 시설 민간위탁을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새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비합리적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 받음
 - 현장을 대변하되 경기도 내 수탁자 입장에서 보다는 타 시·도 또는 광역범위의 수탁자의 공통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반영함

□ 보건복지부의 수탁자선정심사지표와 비교하여 경기도 지표는 구체적이며 다양한 경로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설계

- 보건복지부 기준은 신규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배점의 범위가 넓어 한 가지 항목으로 수탁자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선택항목을 추가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였음

17)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지표를 참고할 것

〈표 Ⅳ-2〉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지표 비교

심사영역	보건복지부		심사지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 위탁 심의 지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가. 수탁자의 자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동산)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30	A. 법인의 적합성 (26) B. 법인의 사업능력 (16)	A1. 법인의 유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2	-	1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4	3	2
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동산)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30	A. 법인의 적합성 (26) B. 법인의 사업능력 (16)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3	-	2
				A4. 법인의 회계진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A5. 최근 3년간 법인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6	4	2
				A6. 수탁신청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는 어떠한가?	5	4	2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2	-	1
				B3.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B4.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C1. 시설장(내장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6	4	2
				C2. 시설장 내장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6	4	2
다. 지역사회 공신력 종합의견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0	G. 종합 의견(6)	C3.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6	4	2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6	4	2
				D2.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6	4	2
				D3.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6	4	2
				E1.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4	3	2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F1.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F2. 향후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4	3	2
계				100	65	39	20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과 관리에 필요한 조례와 지표를 작성하여 제안

- 공공은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효과성 확보를 목적으로 민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 유지 중에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지속
 -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설 73.9%가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 5조원이 민간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 지자체 사무에서 중요한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조례는 위탁준비부터 사후관리 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은 큰 틀의 방향만을 제시할 뿐 이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될 항목들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간위탁 절차 및 지표, 조례를 검토하고 보완·개선하였으며, 시설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지침, 타 시·도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조례와 지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조례와 지표 등을 분석하였음
 - 조례 내용 중에 포함되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위탁기관과 수탁자 상호간에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했음
 - 조례의 항목이 보완된 만큼 위·수탁자 계약상에도 추가되는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 연구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수탁자선정심의 지표안을 제시

- 시·군 공무원이 위탁사무를 실행할 때 직접적 근거와 지침이 되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법률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포함
 - 둘째, 위탁사무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포함
 - 셋째, 위탁기관과 수탁자 상호간의 권리를 보장·보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타 시·도와 시·군의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검토내용 반영
 - 조례 내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담당 부서별 조례 160여개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
 - 타 시·군에서 개별조례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검토하고 필수 내용 도출
 -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시·군 공무원 대상 질문지 조사를 통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심의지표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 00시 법률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통해 형식과 내용 측면을 보완하였음
- 조례안의 최대 장점은 단계별 필요 항목을 구체화 했다는데 있음
 -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지표 내용을 보완하여 포함, 의회동의 안, 이의신청 등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상호 견제기능을 추가하였음
- 실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계약서 사례를 수집하여 표준안 작성하고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 첫째,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상호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전환
 - 둘째, 필수 계약사항에 대한 제안을 의무화 하는 등 변화 반영
 - 예를 들어, 종사자 고용승계는 “ ~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 해야한다 ” 로 수정하는 방식
 - 셋째, 조례 내에 적시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구체화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체심의지표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함
 - 첫째, 신규위탁과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신청 법인과 운영주체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사회복지시설 안내와 사회복지사업법 등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
 - 셋째, 지표를 간소화 하되 수탁자 선정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점수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넷째, 기존 사회복지법인과 신생법인 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필요사항을 추가·보완 함
 - 시·군 담당 공무원은 실제 시설 민간위탁을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새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비합리적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 받음
 - 현장을 대변하되 경기도 내 수탁자 입장에서 보다는 타 시·도 또는 광역범위의 수탁자의 공통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반영함
- 지치단체 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지원 차원에서 제시되는 제안사항으로 참고할 수 있음

2. 정책제언

1) 제도적 개선

□ 중앙차원의 법규와 지침의 정비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본적인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¹⁸⁾ 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고 되어있음
 -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민간위원을 선정심의위원회의 과반수로 한다” 또는 “시·군의 의회의원은 1인을 넘지 못한다” 등을 규칙 제22조의 2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재계약의 경우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심사 전에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자 선정 전에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심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시·군에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파급력이 크므로 이를 강화하여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탁관련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여 주관적, 정치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함
 - 모집에 필요한 홍보를 전국 단위로 하여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관련 일보에 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관련 홈페이지 및 유관 법인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함
 - 공고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공식적인 플랫폼(platform)에 공시하도록 지침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
 -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위탁 과정과 재계약을 위한 심사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필요한 기준(지표)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함

18)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 시·군 조례 및 규칙 제·개정

-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의 지자체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음
 -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하였을 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각기 다른 부서의 위탁 조례 또는 통칭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도 그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적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로 통일하여 제·개정을 진행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조례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모집, 선정기준 및 배점 기준의 명확화, 위원 구성 및 운영, 소관 상임위 위원의 배제, 성과평가의 실시 등을 담고 있어야 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이 부족한 보건복지부 시행령 또는 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새로운 지침과 권고안을 적용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여부와 새로운 선정심의지표의 활용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정도와 투명성, 정당성 확보 노력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점차 지방이양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방권력화 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시·군 담당부서에 지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활용 정도를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2) 공개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쟁력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
 - 민간위탁의 공개경쟁 활성화는 시·군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우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들의 정보를 확보해야 함
 - 모집 대상을 전국 차원으로 넓히고 위·수탁 대상이 되는 시설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고정된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확보 등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함
 - 심사는 절차와 방식이 공지되고 변별력 있는 선정심의 기준이 사전 제시되어야 함
 - 신청법인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므로 선정심사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심사의 기준과 작성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함
 - 재계약 심의를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의 구성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이해관계자 배척 등을 담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제3의 기관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시·군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신청 법인들의 참여도를 제고
 - 전문적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거나 구성이 가능한 기관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시민대표와 당연직인 공무원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심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인력을 모집·해산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의제도”를 대행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재계약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수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측정

3) 중앙 및 광역 정부의 평가와 연계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의 연계 방안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중앙과 지역 내 평가, 수탁기간을 위한 심의, 시·군의 지도점검 등

- 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가 지나치게 많은 경향이 있음
- 각각의 평가들은 연동되지 않고, 평가 시기가 조정되지 않으며, 나름의 일정대로, 반복된 평가가 진행되어 현장의 업무가 가중됨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대부분의 기관이 B등급 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약하므로 이를 재계약 등에 적용하기 어려움
- 중앙평가 또는 경기도 평가의 결과를 시설운영의 성과평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만들고 평가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심사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개설

-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수행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은 오랜 업무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잦은 업무교체와 순환보직으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경향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사자 및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경기복지재단 등에서 신규 시설담당 공무원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여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함

참고문헌

- 공창숙(201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 창업연구6(3) pp109-129. 한국벤처창업학회
- 곽경인(2019),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국민권익위원회(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김영중(201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pp406-4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윤희(2012),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성기(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보건복지부(2018),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 신용규(2017), 위수탁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왜곡,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pp33-4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오세민 · 박지현 · 이상호(2015),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pp165-176
- 유정원 · 백민희 · 신은경(2013),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표준조례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정병순(2019),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 이인희(200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서울행정학회
- 보건복지부(2019),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행정자치부(200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부록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시장·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자”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시장·군수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신규위탁”이라 함은 신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를 달리하여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8.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동일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군수)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 (기본이념)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자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는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탁자 선정절차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군수)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군수)은 제6조제1호, 제2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2억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군수)이 제8조의1, 2, 3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 및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시설 및 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비용 산출 내역(비용 추계)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시설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복지 시설의 수탁자는 본 조례의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며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군수)은 위탁개시일 180일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은 신청자 중 적절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군)보 또는 시(군) 홈페이지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재공고시에도 단독신청자일 경우 최대 3차까지 공고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2차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 3차 공고 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은 신규위탁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능력,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별표 2¹⁹⁾의 기준에 따른다.
3.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군수)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단, 해당 시공무원은 1/4이하로 한다)
2.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이에 해당되는 자격과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지역주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재계약의 경우는 해당시설 이용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시(군)의회 의원의 수는 1명 넘지 못한다.
5.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자

④ 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19) 신규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2. 품위손상, 장기이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⑧ 위원은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한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이 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운영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시설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탁신청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필요할 경우,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수탁자선정심 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 위/수탁자의 의무

제16조 (위/수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 (위/수탁계약 체결) 시장(군수)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 반납, 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고용승계)위탁기간이 종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시설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를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각종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19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시장(군수)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학교,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20조 (재위탁) 위탁자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수탁자를 달리하여 연속위탁하고자 할 때는 제10조 각항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재계약) ① 시장(군수)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기존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을 연장(재계약)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서식1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연장(재계약)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수탁연장(재계약)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13조의 1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취소~~, 공개모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수탁자는 기준점수에 따라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은 시설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에 관하여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표 부록-1〉 기준점수표, 범례

위탁여부	기준점수
위탁취소	0점~69점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70점~80점
재계약 (수탁연장)	81~100점

제21조 (운영지원) 시장(군수)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감사) ① 시장(군수)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현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금 반환명령) 시장(군수)은 제1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24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시장(군수)은 민간위탁 시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00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26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000시 사회복지시설 □□□ 운영 위·수탁 계약서

「000시(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000시(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000시(군) “시(군)”라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를 △△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군)’가 ___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함) 운영 및 위탁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시(군)”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시(군)”가 △△에게 위탁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 2.
- 3.

② △△가 제1항에 따라 □□□의 운영을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 1.
- 2.
- 3.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위·수탁 기간은 2020년 6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수탁 시설의 관리) ① △△은 수탁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요 물품의 구입 등 수탁시설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군)”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시설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군)”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시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군)” 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는 이 계약 체결 후 “시(군)” 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개보수 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시설과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물품 등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군)” 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는 수탁시설 재산에 대한 매수청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0월말 까지 “시(군)”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시(군)” 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군)”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게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은 수탁자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자에게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군)” 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 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군)” 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 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군)” 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000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 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군)” 에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를 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장(군수)” 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시(군)” 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군)”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군)”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 연

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해당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군)”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군수)”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② “시(군)”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월 ○주, ○월 ○주로 한다) 또한,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군)”의 소속직원 또는 “시장(군수)”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은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군)”는 △△과의 위·수탁기간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사회복지시설 운영)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시(군)”와 △△은 협의에 따른 위·수탁 사무(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군)”는 △△과 협의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조례와의 연계) 미만인 경우, “시(군)” 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군)” 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 ⑥ △△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시(군)” 는 △△의 정규직 비율 유지 실태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 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00시장” 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년 0월 0일까지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 은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군)” 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0월 0일까지 “시(군)” 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민법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군)”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의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군)” 또는 △△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8.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 ③ “시(군)” 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통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중에 대하여 “시(군)”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위탁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 제15조제2항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수탁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물품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군)”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 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군)” 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시(군)” 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군)” 의 비밀사항, 그 밖에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이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000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시(군)” 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군)” 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한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 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군)” 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군)” 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군)” 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0월 0일

“시(군)” 000시 (000시 000로 00)

0 0 0 시장 0000 (인)

“△△” 000시 (000시 000로 00)

대 표 0000 (인)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표 부록-2〉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 선정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42)	A. 법인의 적격성 (26)	A1. 법인의 유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2	-	-	1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4	3	2	1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3	-	2	1	
		A4.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1	신생법인 미해당
		A5. 최근 3년간 법인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6	4	2	1	
		A6. 수탁신청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는 어떠한가?	5	4	2	1	
	B. 법인의 사업능력 (16)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2	-	1	-	
		B3.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1	
		B4.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신생법인 미해당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4)	C. 시설장 및 종사자 (18)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6	4	2	1	
		C2.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6	4	2	1	
		C3.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6	4	2	1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8)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6	4	2	1	
		D2.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6	4	2	1	
		D3.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6	4	2	1	
	E. 재정 (8)	E1.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4	3	2	1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다. 지역사회 공신력 (8)	F. 지역사회 관계 (8)	F1.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F2. 향후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 의견(6)	G. 종합의견 (6)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6	4	2	1	
계			100	65	39	20	

* A4, B4, B5, E2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0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영역별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하여 배점을 달리 하였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신생법인은 설립허가 이후 만3년이 경과되지 않고, 운영시설이 법적 평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을 말함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1. 법인의 유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점수
평가 내용	우수(2)	사회복지법인	□ 2점	
	미흡(1)	사단법인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신청 법인의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함. ○ 법인의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운영규정 등의 관련 항목도 참조함. ○ 법인의 유형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정관 : 정관의 목적사업과 내용을 확인 후 판정함.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수탁하고자 하는 해당 사회복지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②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③ 운영규정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내용이 적절하다.		
	탁월(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필수항목 ①을 포함한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필수항목 ①을 제외한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에 해당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정관 내에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를 위해 정관, 운영규정집 등을 평가함. ○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 기관의 운영규정집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기에 충실한가?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어느 분야에 중점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정관 ○ 운영규정집 :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별도의 규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규정만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 하여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기관의 정관과 운영규정집의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 후 내용의 충실성을 판정한다. ○ 정관 목적사업 확인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점수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30% 이상이다. ②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비율이 20% 이하이다. ③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우수(3)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1~2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법인대표 및 이사회 의 인력구성이 적정함을 확인함. ○ 이사는 7인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 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는 이사 현원 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성이사의 적절성 평가 : 이사의 주요경력 및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정도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법인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이사제의 적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 한 사람 중 선임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근거) <table border="1" data-bbox="345 1191 1245 138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이사정수</th> <th style="width: 50%;">필요 외부추천이사 수</th> </tr> </thead> <tbody> <tr> <td>7명 / 8명</td> <td>2명</td> </tr> <tr> <td>9명 / 10명 / 11명</td> <td>3명</td> </tr> <tr> <td>12명 / 13명 / 14명</td> <td>4명</td> </tr> <tr> <td>15명 / 16명 / 17명</td> <td>5명</td> </tr> <tr> <td>18명 / 19명 / 20명</td> <td>6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주요 경력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시설 평가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가 30% 이 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사회 개최회수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위의 조건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이사회 의 구성” 에 근거함. 			이사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이사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 이사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 등 ○ 이사회 조직도 														
비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예시 :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4.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법인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인 경우	□ 6점	
	우수(4)	법인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 미만	□ 4점	
	보통(2)	법인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90% 미만	□ 2점	
	미흡(1)	법인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 미만인 경우	□ 1점	
해설	<p>○ 신청 법인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p> <p>○ 법인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 의견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적절성을 판단</p> <p>○ 법인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회복지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9. 6. 12 시행) 제42조2(회계감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42조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p> </div> <p>○ 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p> <p>○ 법인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p> <p>○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였는가?</p>			
증빙 자료	<p>○ 법인의 감사보고서</p> <p>○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p>			
비고	<p>○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 실천률이 8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p> <p>○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미흡으로 처리.</p> <p>○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흡처리 (공개는 홈페이지, 시설의 내부, 시청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공개 내용을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p> <p>○ 신생법인은 자체감사 계획으로 같음 함</p> <p>○ 법인 내부의 이사 또는 감사가 실시한 감사는 미인정</p>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5. 최근 3년간 법인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지적사항이 1건도 없거나,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 6점
	우수(4)	지적사항이 1~2건 있고,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 4점
	보통(2)	지적사항이 1~2건이나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된다.		□ 2점
	미흡(1)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활동을 평가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참고 ○ 최근 3년 이내 법인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 지적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바로 수정조치가 가능한 정도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해당 ○ 최근 3년 이내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6. 수탁신청법인의 소재지와 지역사회 기여도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5)	법인이 수탁신청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관련 직접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 5점	
	우수(4)	법인이 수탁신청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사회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4점	
	보통(2)	법인이 수탁신청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으나 중간지원 조직에 의해 시설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 2점	
	미흡(1)	법인이 신청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수탁시설이 위치한 시·군내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수탁시설 운영에 직접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 분소 또는 지역사무소로 대체 적용 가능 ○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도와 활동여부를 판단함 ○ 중간지원 조직은 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종교기관 등 ○ 법인이 같은 시·군내에 속해있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증빙 자료	○ 법인 등기부 등본			
비고	100% 정성지표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은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주사무국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추고 있다.	□ 4점	
	우수(3)	법인은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주사무국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있으나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 3점	
	보통(2)	법인은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주사무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기준을 잘 갖추고 있다.	□ 2점	
	미흡(1)	법인은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주사무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주사무국, 조직, 운영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여건을 평가함. ○ 법인의 환경(주사무소, 전담인력, 운영기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사무국과 인력, 기준을 두어 시설운영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 법인은 산하시설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주사무소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직원대장 및 직급 급여대장 ○ 법인 수탁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시설 내에 법인의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 0점 처리. (시설의 직원이 법인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법인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② 법인 이사회에 이사진 참여율이 평균 90% 이상이다. ③ 법인 이사회에서 상정된 내용이 사업이나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우수(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보통(1)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1점
	미흡(0)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이사회 활동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이사회 활동성을 확인한다. ○ 법인의 정기적인 이사회에 이사들의 참여율을 확인하여 적절성을 판단. - 주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 운영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이사진의 적정 의견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이사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법인은 이사회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사업내용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법인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 결과를 사업 반영정도 확인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3.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절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매우 적절한 수와 적정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4점	
	우수(3)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비교적 적절한 수와 적정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3점	
	보통(2)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법인의 규모와 맞지 않는 수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2점	
	미흡(1)	법인은 재정능력과 행정능력 대비 법인의 규모와 맞지 않는 수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와 규모를 평가하고 법인의 재정능력, 행정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함. ○ 법인의 규모(재정, 행정)를 감안하여 적정 수,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 종합하여 상대평가. ○ 법인업무 상근인력과 법인 산하 수탁시설의 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 산출식 = 결산액 / 법인의 위탁시설(산하시설) 수 ○ 신청 법인은 법인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가? <p>* 적정규모에 대한 근거는?</p>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료 ○ 법인의 성격과 적정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구비자료. ○ 법인 관련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지표 ○ 법인의 수탁시설(산하시설)수 등이 증가되어질 때 이에 따른 규모(재정, 행정)가 확대 조정되고 있는 경우를 바람직한 것으로 봄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4.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 6점	
	우수(4)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다.	□ 4점	
	보통(2)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다.	□ 2점	
	미흡(1)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하이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능력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수탁 받은 심의일로부터 3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소 수 비례 평가 점수 평균 ○ 수탁 신청 시설별 운영평가 실적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실적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법인 미해당.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점수
평가 내용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부장 및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탁월(6)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6점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 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2, 3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경력정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함.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말함. ○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영향력, 봉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간 동안 시설장(내정자)의 근무현황 확인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2.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	□6점	
	우수(4)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를 신뢰할 수 있으나 추진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	□4점	
	보통(2)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2점	
	미흡(1)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적극적인 추진의사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 수탁시설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 수탁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 사업추진에 대한 현실가능성, 명확성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시설장(내정자) 면접 또는 사업계획 설명으로 판단 			
비고	100% 정성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3.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종사자 채용기준 및 근거(안)와 조직구성(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확보되어 있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인력구성 방안 및 채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탁월(6)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 6점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4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를 고려한 인사관리 체계, 전문인력의 구성, 인력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역량을 평가함. ○ 사업계획서의 인력운영, 인력관리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이 적정하고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며, 타당한가로 판단. ○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부장 및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 해당 시설의 전문 인력 기준(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 중간관리자 및 적정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치밀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등 ○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높다.	□ 6점	
	우수(4)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4점	
	보통(2)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낮다.	□ 2점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1점	
해설	<p>○ 신청 시설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목적·목표의 구체성과 연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합성을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계획의 명확성 -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설의 목적사업과 특화사업의 구분 <p>○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 등이 구체적인가?</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p> <p>○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가?</p>			
증빙 자료	<p>○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서</p> <p>○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p>			
비고	정성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D2.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절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이 매우 적절하다.	□ 6점	
	우수(4)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비교적 적절하다.	□ 4점	
	보통(2)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 2점	
	미흡(1)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과 소요예산 비율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의 편성내용(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은 적절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은 적절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율은 적절한가? ○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관·항·목으로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사용 계획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이 32% 이상(경기도 보조금사업비 비중 권고 참조) 되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D3.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p>① 해당시설(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관의 비전 및 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해당 시설(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중·장기계획안은 지역조사(지역사회보장계획)를 반영하고 있다. ④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308 681 1265 925"> <tr> <td data-bbox="308 681 417 741">탁월(6)</td> <td data-bbox="417 681 1144 741">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td> <td data-bbox="1144 681 1265 741">□ 6점</td> </tr> <tr> <td data-bbox="308 741 417 802">우수(4)</td> <td data-bbox="417 741 1144 802">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td> <td data-bbox="1144 741 1265 802">□ 4점</td> </tr> <tr> <td data-bbox="308 802 417 862">보통(2)</td> <td data-bbox="417 802 1144 862">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td> <td data-bbox="1144 802 1265 862">□ 2점</td> </tr> <tr> <td data-bbox="308 862 417 925">미흡(1)</td> <td data-bbox="417 862 1144 925">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td> <td data-bbox="1144 862 1265 925">□ 1점</td> </tr> </table>			탁월(6)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	□ 6점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1점
탁월(6)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	□ 6점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1점													
해설	<p>○ 기관의 중장기적 조직운영을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를 평가함. ○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내용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함. ○ 기관의 비전 및 목표수립을 중장기 계획안과, 연도별 실행계획안으로 보고 판단 ○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p> <p>○ 위탁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장기 계획안은 시설장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가?</p>														
증빙 자료	<p>○ 시설의 비전 및 목표 ○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p>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E. 재정
심사 항목	E1. 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5% 이상	□ 4점	
	우수(3)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4~5% 미만	□ 3점	
	보통(2)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3~4% 미만	□ 2점	
	미흡(1)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3% 미만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이 확보한 수탁대상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전입금) / 수탁대상시설의 연간예산 * 100)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 계획을 상대적으로 판단 ○ 보조금은 수탁대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주체가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지원받는 사업비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약서에 명시)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법인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수탁신청 신청 액의 평균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재정부담 계획에 따라 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E. 재정
심사 항목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5%~100%	□ 4점	
	우수(3)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0~95%미만	□ 3점	
	보통(2)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90%미만	□ 2점	
	미흡(1)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 미만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법인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의 연도별 수탁시설 지원한 총액과 추이를 보고 판단. ○ 수탁시설 지원액에 대한 예산대비 실적의 비율로 판단. ○ 신청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재정지원 실적을 상대평가.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최근 3년간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 최근 3년간 법인의 계획대비 실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시설이 없는 신생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1.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2차 자료 포함)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사업계획서 상 지역사회 협력관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계획,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실천을 위한 자원 확보 계획 등 대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지역사회 협력관계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과정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형성, 자원확보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 		
비고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2. 향후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향후 사회복지시설 홍보물을 매년 발행하며 SNS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② 홍보물 발행계획 및 내용이 충실하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④ SNS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향후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 1점
해설	○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사회복지시설 홍보물로는 이메일, 웹진,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방송매체, 전단지, 리플렛, 옥외 전광판, 동영상 비디오 등이며 이중 6종 이상 시행했을 경우 탁월로 평가함. ○ 소식지란 기관의 사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인 기관 홍보물을 말함. Facebook, Twitter 등 SNS의 정기적 홍보도 인정 ○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이버 상으로 기관의 사업소개 및 지역주민에게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에 상호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을 말함. - 주요 질문 ○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홈페이지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가? ○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할 것인가?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상 사회복지시설 홍보 및 관련 자료		
비고			

영역	라. 종합의견		심사 지표	G. 종합의견
심사 항목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6점	
	우수(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4점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2점	
	미흡(1)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1점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표 부록-3〉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24)	A. 법인의 적격성 (13)	A1.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3	2	1	-	정성평가	
		A2. 수탁기간 5년간 법인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A4. 법인이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가?	2	-	1	-		
	B. 법인의 사업능력 (11)	B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B2.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실적)은?	3	2	1	0		
		B3. 법인의 사업수익·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	4	3	2	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9)	C. 시설장 및 종사자 (14)	C1.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2	0	1	0	정성평가	
		C2. 신청시설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4	3	2	1		
		C3.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C4. 시설장의 경력정도와 책임성은 어떠한가?	4	3	2	1		
	D. 사업의 전문성 (38)	D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D2.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정도는 어떠한가?	4	-	2	-		
		D3.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4	3	2	1	정성평가	
		D4. 사업 수행 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D5.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4	3	2	1	정성평가	
		D6. 수탁기간 동안 수탁대상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3	2	1	0		
		D7. 신청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D8. 인증 또는 컨설팅 등 시설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 실적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D9.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 특성화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D10.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3	2	1	0		
	E. 재정 (7)	E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신청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3	2	1	0		
		E2.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수탁 실적은?	4	-	1	-		
	다. 지역사회 공신력 (13)	F. 지역사회 관계 (13)	F1. 신청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	3	2	1	0	
			F2. 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은 어떠한가?	2	-	1	-	
			F3.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정성평가
F4.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의견 (4)	G. 종합의견 (4)	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4	3	2	1	정성평가	
계			100	63	46	17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1.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해당 사회복지분야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명확하다.	□ 3점	
	우수(2)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포괄적 사회복지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2점	
	보통(1)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해당 사회복지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1점	
	미흡(0)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사회복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의 연계를 위해 정관, 운영규정집 등을 평가함.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되어 있는가? ○ 기관의 운영규정집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적합한가?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어느 분야에 중점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정관 ○ 운영규정집 ○ 정관 목적사업 확인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2. 수탁기간 5년간 법인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매우 경미하다.		□ 4점
	우수(3)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3점
	보통(2)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2점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활동을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시·군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 지적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바로 수정조치가 가능한 정도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로 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매년 보건복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 4점
	우수(3)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미만~70%이상인 경우		□ 3점
	보통(2)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70%미만~60%이상인 경우		□ 2점
	미흡(1)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60%미만인 경우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법인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의견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적절성을 판단 ○ 법인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 ○ 법인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후원자 등에게 회계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감사보고서 ○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이 6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 ○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처리.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A. 법인의 적격성
심사 항목	A4. 법인이 수탁시설 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2)	수탁시설 관리 담당직원이 있고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 및 지도감독 실시하고 있다.		□ 2점
	보통(1)	수탁시설 관리 담당직원이 있고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는 있으 나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담당 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탁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 지 않으며 비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안에 위탁 받은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이 있는가? ○ 법인의 산하시설을 지원·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하여 평가. ○ 법인은 산하시설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 법인의 복지 관련 산하시설 지원·감독하는 인력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확인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 (업무수행관련 방침,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등). 			
비고	<p>※ 법인의 수탁시설 수 등이 증가될 때 이에 따른 규모(재정, 행정)가 확대 조정되고 있는 경우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p>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가 90점(A등급)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4점	
	우수(3)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가 80점(B등급)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3점	
	보통(2)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가 70점(C등급)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수탁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점수가 60점(D등급)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 			
비고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2.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실적)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연평균 법인 자부담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8~10% 정도	□ 3점	
	우수(2)	연평균 법인 자부담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5~7% 정도	□ 2점	
	보통(1)	연평균 법인 자부담이 기관 1년 예산의 5% 미만	□ 1점	
	미흡(0)	연평균 법인 자부담이 기관 1년 예산의 3% 미만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이 확보한 수탁대상 기관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전입금) / 수탁대상기관의 연간예산 * 100)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기관 연간보조금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 계획을 상대적으로 판단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약서에 명시)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 보조금 대비 부담비율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법인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영역	가.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 항목	B3. 법인의 사업수익·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사업수익·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탁월하게 관리되는 경우		□ 4점
	우수(3)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사업수익·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우수하게 관리되는 경우		□ 3점
	보통(2)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사업수익·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이 보통으로 관리되는 경우		□ 2점
	미흡(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사업수익·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및 기본자산의 연간이자액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의 사업수익·후원금 등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기부·후원금 연평균 약정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유동자산의 연간 이자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산출식 = 사업수익·후원금 ÷ 법인 운영 중인 시설 수 ○ 수익사업과 후원금 현황은 어떠한가? ○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결산서 ○ 법인의 위탁시설 수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1.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점수
평가 내용	우수(2)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	□2점	
	보통(1)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1점	
	미흡(0)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사업주체(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적극적인 추진의사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 수탁시설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 수탁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 사업추진에 대한 현실가능성, 명확성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시설장(내정자) 면접 또는 사업계획 설명으로 판단 			
비고	100% 정성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2. 신청시설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종사자 채용기준 및 근거(안)와 조직구성(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확보되어 있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인력구성 방안 및 채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를 고려한 인사관리 체계, 전문인력의 구성, 인력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역량을 평가함. ○ 사업계획서의 인력운영, 인력관리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이 적정하고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며, 타당한가로 판단. ○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부장 및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 해당 시설의 전문 인력 기준(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 중간관리자 및 적정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치밀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등 ○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3.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시간을 1인당 24시간 이상 제공한다 ③ 신입직원 교육은 수습기간 내에 1인당 24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 한다.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주 2가지 이하 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진행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직원의 능력증진과 전문성 확보 정도를 평가함. ○ 교육, 훈련 산출식 = 전체 직원(정규직+계약직)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내·외부교육기간(시간) / 전체 직원 수(3년 평균) / 3년 ○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은 제외함. ○ 사회복지사협회 사이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1일 1시간 인정함.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함. ○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함. ○ 해외 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 ○ 운영법인이 2개 이상의 운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은 외부교육으로 인정함. ○ 1인당 최대 50시간 한도 인정함. 			
증빙 자료	○ 년도 별 교육일지(출장일지 등) 와 교육 참가 보고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전체공동 평가지표 중 직원교육 참고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교과 이외에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C.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C4. 시설장의 경력정도와 책임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⑤ 수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4일 이상 상근하였다.		
	탁월(4)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 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경력정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함.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말함. ○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영향력, 봉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 출·퇴근 기록 등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의 전문성
심사 항목	D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	□ 4점	
	우수(3)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 3점	
	보통(2)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 2점	
	미흡(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 1점	
해설	<p>○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p> <p>○ 향후 수탁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p> <p>- 주요 질문</p> <p>○ 사업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의 정도는 어떠한가?</p> <p>○ 주민욕구조사의 내용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p>			
증빙 자료	<p>○ 주민욕구조사 계획서, 주민욕구조사 설문지, 주민욕구조사 결과보고서</p> <p>○ 사업계획서</p> <p>○ 조사와 반영결과 비교표</p>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의 전문성
심사 항목	D2.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정도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수탁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수탁기간 동안 실시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③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점수 평균이 95점 이상이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4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0)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되거나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실시 후 자체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수렴 정도를 평가함. ○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한 내용의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다양한 서비스 만족변수를 보고 평가 ○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시설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명부 중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함. <p>– 주요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프로그램 자체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간 동안에 운영평가 결과 자료 ○ 이용자 실적관리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평가기간 중 이루어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인정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의 전문성
심사 항목	D3.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높다.	□ 4점	
	우수(3)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3점	
	보통(2)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낮다.	□ 2점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1점	
해설	<p>○ 신청 시설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목적·목표의 구체성과 연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합성을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계획의 명확성 -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설의 목적사업과 특화사업의 구분 <p>○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 등이 구체적인가?</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p> <p>○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가?</p>			
증빙 자료	<p>○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서</p> <p>○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p>			
비고	정성평가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 수행의 전문성
심사 항목	D4. 사업 수행 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목표 달성방안)이 일치하고,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이다.	□ 4점	
	우수(3)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목표 달성방안)이 일치하고, 목표달성도가 80% 이상이다.	□ 3점	
	보통(2)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목표 달성방안)이 일치하고, 목표달성도가 70% 이상이다.	□ 2점	
	미흡(1)	세부프로그램과 수행방법(목표 달성방안)이 일치하고, 목표달성도가 70% 이하이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회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평가함. ○ 신청 사업계획서 상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등을 참고하여 판단. ○ 목표달성도는 사업의 목표대비 달성정도 (이용자 수, 프로그램 목적, 이용자 만족도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정도를 파악함 <p>- 주요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 프로그램과 수행방법(달성방안)이 일치하는가? ○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세부계획)이 관리도표나 사업수행 일정과 연계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일정 및 관리도표 등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수행의 전문성
심사 항목	D5.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절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이 매우 적절하다.	□ 4점	
	우수(3)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비교적 적절하다.	□ 3점	
	보통(2)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 2점	
	미흡(1)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과 소요예산 비율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의 편성내용(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은 적절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은 적절한가?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예산대비 운영비의 비율은 적절한가? ○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관·항·목으로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사용 계획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대비 사업비의 비율이 32% 이상(경기도 보조금사업비 비중 권고 참조) 되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수행의 전문성
심사 항목	D6. 위탁기간 동안 위탁대상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대상시설 상위 10%에 해당된다.	□ 3점	
	우수(2)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대상시설 상위 11 ~ 20%에 해당된다.	□ 2점	
	보통(1)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대상시설 상위 21 ~ 40%에 해당된다.	□ 1점	
	미흡(0)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대상시설 평가결과의 41% ~ 에 해당된다.	□ 0점	
해설	<p>○ 사회복지시설 운영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p> <p>○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함.</p> <p>- 주요 질문</p> <p>○ 사회복지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p>			
증빙 자료	○ 위탁기간 내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료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D7. 신청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시설(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관의 비전 및 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해당 시설(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중·장기계획안은 지역조사(지역사회보장계획 등 2차 자료 포함),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④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중장기적 조직운영을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를 평가함. ○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내용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함. ○ 기관의 비전 및 목표수립을 중장기 계획안과, 연도별 실행계획안으로 보고 판단 ○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위탁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장기 계획안은 시설장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비전 및 목표 ○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의 전문성
심사 항목	D8. 인증 또는 컨설팅 등 시설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 실적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수탁기간 동안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인증, 시설인증 또는 분야별 컨설팅을 포함한 시설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을 수행한 실적이 있다.		□ 4점
	우수(3)	수탁기간 동안 외부기관에 수행하는 프로그램 인증, 시설인증 또는 분야별 컨설팅을 신청한 실적이 있다.		□ 3점
	보통(2)	수탁기간 동안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다.		□ 2점
	보통(1)	사업계획 중 시설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충실하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은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ISO9001 등)를 사용하거나, 자격을 갖춘 외부 기관에 자발적 신청을 통해 실시한 인정과정 ○ 컨설팅은 사업 내용 중 분야별 (회계, 노무, 사업계획, 직원 역량강화 등) 발전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발적 신청을 통해 받은 컨설팅 (법인이 받은 컨설팅에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수탁기간 중 사업계획 안에 시설에 대한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나 받은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인증 및 컨설팅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인증 또는 컨설팅을 받아 시설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관련 자료 ○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자체 복지재단, 인증 전문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포함함.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D9.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 특성화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지역사회특성 반영을 위한 지역사회 사정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어있다. ② 참여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욕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어있다. ③ 특성과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④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자원동원활용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있다. ⑤ 특성화사업의 타 지역 기관과의 차별성 및 참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탁월(4)	위 항목 중 5가지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3점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개별 추진사업, 중점시책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을 참고하여 판단. ○ 신청시설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하여 창의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평가함. ○ 지역사회 특성 반영 여부,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 다른 지역 기관과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를 평가함. ○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의 내용(질)과 양(횟수)을 확인하여 평가. - 주요 질문 ○ 어떤 특성화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실적, 과정기록지, 운영일지 등 ○ 지역사회사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욕구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고	※ 특성화사업이란 그 기관의 지역적인 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타 기관과 차별화 되어 그 기관의 정책방향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특화시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 시·군별 중점 시책사업의 참여 내용 확인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D. 사업의 전문성
심사 항목	D10.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 경미하다.		□ 3점
	우수(2)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2점
	보통(1)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 1점
	미흡(0)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설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사회복지시설 활동을 평가함.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시설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E. 재정
심사 항목	E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신청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0% 이상인 경우	□ 3점	
	우수(2)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 이상~90% 미만	□ 2점	
	보통(1)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이상~80% 미만	□ 1점	
	미흡(0)	법인의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미만	□ 0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 시설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신청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법인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의 연도별 수탁시설 지원한 총액과 추이를 보고 판단. ○ 수탁시설 지원액에 대한 예산대비 실적의 비율을 보고 판단. ○ 신청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재정지원 실적을 상대평가.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계획대비 실적. 			
비고				

영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E. 재정
심사 항목	E2.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수탁 실적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공모사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10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1)	공모사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10건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이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이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사회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여 법인의 사업능력을 평가함. ○ 실적 건수는 정규직원 수 대비 연간 1건 계산, 건당 500만원 기준 ○ 참여 실적은 시설의 참여 및 채택실적 확인. ○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모사업의 금액을 확인하여 평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비고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1. 신청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시설 홍보물을 매년 6종 이상 발행하며 내용이 충실하다.	□ 3점	
	우수(2)	시설 홍보물을 매년 6종 이상 발행하며 내용이 미흡하다.	□ 2점	
	보통(1)	시설 홍보물을 매년 5종 이상 발행하였다.	□ 1점	
	미흡(0)	시설 홍보물을 매년 5종 미만 발행하였다.	□ 0점	
해설	<p>○ 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p> <p>○ 시설 홍보물로는 이메일, 웹진(웹포스터, 온라인 뉴스레터) 외부 홈페이지 연동, 내부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방송매체, 전단지, 리플렛, 옥외 전광판, 동영상 비디오 등이며 이중 6종 이상 시행했을 경우 탁월로 평가함.</p> <p>Facebook, Twitter 등 SNS의 정기적 홍보도 인정</p> <p>○ 소식지란 시설의 사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기관 홍보물을 말함.</p> <p>○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이버 상으로 시설의 사업소개 및 지역주민에게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에 상호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을 말함.</p> <p>- 주요 질문</p> <p>○ 신청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발행, 홈페이지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가?</p>			
증빙 자료	○ 시설 홍보 관련 자료			
비고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2. 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p>①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p> <p>②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p> <p>③ 이용자 및 직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④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p> <p>⑤ 내 외부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p> <p>⑥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가 없으며 승강기 등이 있다.</p> <p>⑦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이 있다.</p> <p>⑧ 주출입구, 승강기 등 이동수단에 점자,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다.</p>		
	탁월(2)	위 8개 항목 중 6~7개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 2점
	보통(1)	위 8개 항목 중 5개 이하를 수행하고 있다.	□ 1점
해설	<p>○ 사회복지시설은 다중 이용시설로 이용자의 이용자 중심의 공간배치와 편리성 및 청결함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공간배치의 적절성과 청결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는 5개 항목을 확인하여 그 정도를 판정함.</p> <p>○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확인 (사회복지 시설 평가지표 시설 및 환경 참고)</p> <p>- 주요 질문</p> <p>○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5개 항목을 준수유지하고 있는가?</p> <p>○ 편의증진법에 의한 권장사항 3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가?</p>		
증빙 자료			
비고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3.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2차 자료 포함)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봉사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⑤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이용자의 권리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탁월(4)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 4점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3점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 2점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신청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계획,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실천을 위한 자원확보 계획 등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신청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p>- 주요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계획은 현실적인가?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 확보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 신청 사업계획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기관(예 : 공공기관, 보건소, 지역 병원, 고용안정센터, 기타 지역 내 전문기관에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의뢰한 경우를 말함. ※ 지역사회조직활동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조직체 형성, 운영,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주민의식 교육 등이 포함됨. 			

영역	다. 지역사회 공신력		심사 지표	F. 지역사회 관계 및 이용자 권리
심사 항목	F4.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지역사회 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4점	
	우수(3)	후원자 개발은 활발하나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가 미흡하다.	□ 3점	
	보통(2)	자원봉사자 개발과 관리는 활발하나 후원자 개발 및 관리가 부족하다.	□ 2점	
	미흡(1)	지역사회 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 사업이 모두가 미흡하다.	□ 1점	
해설	<p>○ 수탁기간 동안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관리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시설의 자원의 체계적 유지 및 개발 정도를 평가함.</p> <p>○ 수탁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확인하여 평가.</p> <p>○ 수탁기간 동안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관리, 보상체계 등을 확인하여 평가.</p> <p>○ 수탁기간 동안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과 성과 등의 자료를 보고 평가.</p> <p>- 주요 질문</p> <p>○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가?</p> <p>○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관리, 보상체계 등이 있는가?</p> <p>○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p> <p>○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리내역</p>			
증빙 자료	<p>○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서(홍보계획, 보상계획 등)</p> <p>○ 실적확인(후원자 수, 연도별 후원액수, 자원봉사자 수 등)</p> <p>○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대장</p>			
비고				

영역	라. 종합의견		심사 지표	G. 종합의견	
심사 항목	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점수
평가 내용	탁월(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4점
	우수(3)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3점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2점
	미흡(1)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1점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H. 선택항목	
심사 항목	H1.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규정에 알맞게 잘 되어있다.		□ 3점	
	우수(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인원수나 각 분야별 위원 분포 중 하나가 규정에 약간 미흡하다.			□ 2점
	보통(1)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 둘 다 규정에 미흡하다.			□ 1점
	미흡(0)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거나, 준비 중이다.			□ 0점
해설	<p>○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알맞게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판정함.</p> <p>○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정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p> <p>- 주요 질문</p> <p>○ 운영위원회의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규정에 알맞게 잘 되어 있는가?</p>				
증빙 자료	<p>○ 운영위원회 명단, 활동승낙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확인서명</p> <p>○ 운영위원회 규정</p>				
비고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H. 선택항목
심사 항목	H2.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②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다. ③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④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 운영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탁월(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우수(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보통(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1점
	미흡(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가 연 평균 2회 미만이다.	□ 0점
해설	○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복지관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를 판정함. ○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된 증거들을 요구함. ○ 서면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 주요 질문 ○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개최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참석자 서명 및 회의록 서명, 관련 공문		
비고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H. 선택항목
심사 항목	H3.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사업 수행 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③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④ 시·군의 자체 시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탁월(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3점
	우수(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2점
	보통(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1점
	미흡(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가 연 평균 2회 미만 이다.	□ 0점
해설	○ 각 사업별 참여 공문서, 참여 실적 등으로 판단		
증빙 자료	○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협조공문 등 공공에서 발행 된 문서 ○ 공공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증빙자료 등		
비고			

영역	마. 선택항목	심사 지표	H. 선택항목
심사 항목	H4. 시·군 시설 담당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이용자 만족도 등 시설 운영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② 재계약 신청자의 수탁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③ 수탁 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내용이 잘 개선·보완 되었다. ④ 재계약이 이루어져도 지역사회 내 올바른 서비스 제공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탁월(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3점
	우수(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보통(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미흡(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0점
해설	○ 수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지도·점검 사항 확인		
증빙 자료	○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데이터 ○ 이용자 및 지역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 ○ 공공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증빙자료 등		
비고	정성평가		

